|  |  |  |
| --- | --- | --- |
|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방법》에**  **관한 공고**  국가지식산권국공고제62호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과하였으며,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전력보(田力普)  2011년 6월 27일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방법**  **제1조** 특허권을 명확히 보호하고 특허시행 허가행위를 규범화하고 특허권의 운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과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지식산권국은 전국 특허시행 허가계약의 등록업무를 책임진다.  **제3조** 특허시행 허가의 허가인은 반드시 계약된 특허권자 또는 기타 특허인이어야 한다.  공유 특허권으로 특허시행 허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체 공유인이 별도로 약정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타 공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등록을 신청한 특허시행 허가계약은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체결해야 한다.  체결된 특허시행 허가계약은 국가지식산권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계약 샘플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계약 샘플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5조** 당사자는 특허시행 허가계약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중국에 일상 거주지 또는 경영장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등록과 관련된 수속을 처리할 경우, 반드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중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등록과 관련된 수속을 처리할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당사자는 우편, 직접송달 또는 국가지식산권국이 규정한 기타 방식을 통해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과 관련된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인 또는 그 위탁인의 특허대리기구가 서명 또는 날인한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신청표  (2) 특허시행 허가계약  (3) 쌍방 당사자의 신분증명  (4)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할 경우, 위탁권한을 밝힌 위탁서  (5) 기타 제공을 요구한 자료  **제9조** 당사자가 제출한 특허시행 허가계약은 반드시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특허권 항목 수 및 매 항목 특허권의 명칭, 특허번호, 신청일, 수권(授权)공고일  (3) 시행허가의 종류 및 기한  **제10조** 신분증명을 제외한 당사자가 제출한 기타 각종 서류는 반드시 중문이어야 한다.  신분증명이 외국어일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중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할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한다.  **제11조** 국가지식산권국은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업무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2조** 등록 신청이 심사를 거쳐 합격한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은 당사자에게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증명》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등록 신청이 아래 상황에 해당할 경우, 등록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 통지서》를 발송한다.  (1) 특허권이 이미 중지 또는 취소 선언이 된 경우  (2) 허가인이 특허등기 기록부에 기록된 특허권자 또는 허가를 받아 권한이 있는 기타 특허인이 아닌 경우  (3) 특허시행 허가계약이 본 방법 제9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시행허가의 기한이 특허권의 유효기한을 초과한 경우  (5) 공유 특허권자가 법률, 규정 또는 체결한 특허시행 허가계약 약정을 위반한 경우  (6) 특허권 연간비용(年费)이 체납된 경우  (7) 특허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인민법원이 특허권 취득 보전 조치를 판결하여 특허권의 유관 절차가 중지된 경우  (8) 동일한 특허시행 허가계약으로 등록 신청이 중복된 경우  (9) 특허권이 저당 잡힌 경우 (단, 질권자의 동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  (10) 이미 등록을 받은 특허시행 허가계약과 상충되는 경우  (11) 기타 불합당한 등록을 받은 상황  **제13조**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 후, 국가지식산권국이 본 방법 제12조 제2관 상황이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나, 아직 취소하지 않은 경우,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을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 취소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14조**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의 관련 내용은 국가지식산권국이 특허등기부 상에 등기하고, 특허 관보 상에 다음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허가인, 피허가인, 주분류번호, 특허번호, 신청일, 수권공고일, 시행허가의 종류와 기한, 등록일자.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 후 변경, 취소 및 취소할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은 상응하는 등기와 보고를 해야 한다.  **제15조** 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대중은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의 법률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 당사자가 시행 허가의 기한을 연장할 경우, 원래의 시행 허가의 기한 만료 2개월 이내에 변경 합의, 등록 증명 및 기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지식산권국에 등록 변경 수속을 처리한다.  특허시행 허가계약의 기타 내용을 변경할 경우, 전 조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7조** 시행허가의 기한 만기 또는 특허시행 허가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사자는 기한 만료 또는 해지 협의 체결 후 30일 내에 등록 증명, 해지협의 및 기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지식산권국에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한다.  **제18조** 등록을 거친 특허시행 허가계약과 관련된 특허권이 취소 선언되거나 기한 만료 이전에 중지한 경우, 당사자는 즉시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등록을 거친 특허시행 허가계약의 종류, 기한, 허가사용비 계산 방법 또는 금액 등은 특허업무 관리 부문이 권리 침해에 대한 일정 배상금액 조정 진행에 참조할 수 있다.  **제20조** 당사자가 특허신청 시행허가 계약 등록을 신청할 경우,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등록 신청 시 특허신청 기각, 철회 또는 철회로 간주될 경우, 등록하지 않는다.  **제21조** 당사자가 특허시행행정허가 계약 등록을 신청할 경우, 특허신청 비준을 받아 특허권을 받은 후, 당사자는 즉시 특허 신청 시행허가 계약 명칭 및 관련 조항에 상응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특허 신청이 기각, 철회 또는 철회로 간주될 경우, 당사자는 즉시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22조** 본 방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2001년 12월 17일 국가지식산권국령 제18호로 공포한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 관리방법》은 폐지한다. |  | **关于《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  **办法》的公告**  国家知识产权局公告第62号  　　《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办法》已经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8月1日起施行。  局 长　田力普  二○一一年六月二十七日  **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办法**  **第一条** 为了切实保护专利权，规范专利实施许可行为，促进专利权的运用，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和相关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国家知识产权局负责全国专利实施许可合同的备案工作。  **第三条** 专利实施许可的许可人应当是合法的专利权人或者其他权利人。  　　以共有的专利权订立专利实施许可合同的，除全体共有人另有约定或者《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另有规定的外，应当取得其他共有人的同意。  **第四条** 申请备案的专利实施许可合同应当以书面形式订立。  　　订立专利实施许可合同可以使用国家知识产权局统一制订的合同范本；采用其他合同文本的，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的规定。  **第五条** 当事人应当自专利实施许可合同生效之日起3个月内办理备案手续。  **第六条** 在中国没有经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办理备案相关手续的，应当委托依法设立的专利代理机构办理。  中国单位或者个人办理备案相关手续的，可以委托依法设立的专利代理机构办理。  **第七条** 当事人可以通过邮寄、直接送交或者国家知识产权局规定的其他方式办理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相关手续。  **第八条** 申请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的，应当提交下列文件：  　　（一） 许可人或者其委托的专利代理机构签字或者盖章的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申请表；  　　（二）专利实施许可合同；  　　（三）双方当事人的身份证明；  　　（四）委托专利代理机构的，注明委托权限的委托书；  　　（五）其他需要提供的材料。  **第九条** 当事人提交的专利实施许可合同应当包括以下内容：  　　（一）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  　　（二）专利权项数以及每项专利权的名称、专利号、申请日、授权公告日；  　　（三）实施许可的种类和期限。  **第十条** 除身份证明外，当事人提交的其他各种文件应当使用中文。  身份证明是外文的，当事人应当附送中文译文；未附送的，视为未提交。  **第十一条** 国家知识产权局自收到备案申请之日起7个工作日内进行审查并决定是否予以备案。  **第十二条** 备案申请经审查合格的，国家知识产权局应当向当事人出具《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证明》。  　　备案申请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备案，并向当事人发送《专利实施许可合同不予备案通知书》：  　　（一）专利权已经终止或者被宣告无效的；  　　（二）许可人不是专利登记簿记载的专利权人或者有权授予许可的其他权利人的；  　　（三）专利实施许可合同不符合本办法第九条规定的；  　　（四）实施许可的期限超过专利权有效期的；  　　（五）共有专利权人违反法律规定或者约定订立专利实施许可合同的；  　　（六）专利权处于年费缴纳滞纳期的；  　　（七）因专利权的归属发生纠纷或者人民法院裁定对专利权采取保全措施，专利权的有关程序被中止的；  　　（八）同一专利实施许可合同重复申请备案的；  　　（九）专利权被质押的，但经质权人同意的除外；  　　（十）与已经备案的专利实施许可合同冲突的；  　　（十一）其他不应当予以备案的情形。  **第十三条** 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后，国家知识产权局发现备案申请存在本办法第十二条第二款所列情形并且尚未消除的，应当撤销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并向当事人发出《撤销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通知书》。  **第十四条** 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的有关内容由国家知识产权局在专利登记簿上登记，并在专利公报上公告以下内容：许可人、被许可人、主分类号、专利号、申请日、授权公告日、实施许可的种类和期限、备案日期。  　　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后变更、注销以及撤销的，国家知识产权局予以相应登记和公告。  **第十五条** 国家知识产权局建立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数据库。公众可以查询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的法律状态。  **第十六条** 当事人延长实施许可的期限的，应当在原实施许可的期限届满前2个月内，持变更协议、备案证明和其他有关文件向国家知识产权局办理备案变更手续。  　　变更专利实施许可合同其他内容的，参照前款规定办理。  **第十七条** 实施许可的期限届满或者提前解除专利实施许可合同的，当事人应当在期限届满或者订立解除协议后30日内持备案证明、解除协议和其他有关文件向国家知识产权局办理备案注销手续。  **第十八条** 经备案的专利实施许可合同涉及的专利权被宣告无效或者在期限届满前终止的，当事人应当及时办理备案注销手续。  **第十九条** 经备案的专利实施许可合同的种类、期限、许可使用费计算方法或者数额等，可以作为管理专利工作的部门对侵权赔偿数额进行调解的参照。  **第二十条** 当事人以专利申请实施许可合同申请备案的，参照本办法执行。  　　申请备案时，专利申请被驳回、撤回或者视为撤回的，不予备案。  **第二十一条** 当事人以专利申请实施许可合同申请备案的，专利申请被批准授予专利权后，当事人应当及时将专利申请实施许可合同名称及有关条款作相应变更；专利申请被驳回、撤回或者视为撤回的，当事人应当及时办理备案注销手续。  **第二十二条** 本办法自2011年8月1日起施行。2001年12月17日国家知识产权局令第十八号发布的《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管理办法》同时废止。 |